



Grant Thornton

An instinct for growth™

소식 통 - 조세관련

2014년 10월 31일

Grant Thornton (VietNam)(주)는 이번 소식통으로 각 회사들이 주의한 필요가 있는 일부 정책에 대한 개정을 Update로 다음같이 해드립니다.

소세관련

재무부의 문서 No.12404/BTC-TCT - 2014년9월5일에 발표해서 2014년 01월01일부터 신규투자제안 및 증설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(CIT)의 혜택과 2014년10월 01일에 발표된 정부의 시행령 91/2014/NĐ-CP 호의 세무에 대한 시행령들의 일부 조항을 개정, 보충한다.

1.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의 혜택에 대하여

본 문서에 근거하면 활동하고 있는 회사들은 법인세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 공단내 지점을 설립해서(단. 비낙후경제-사회조건부 지역에 위치한 공단단지 제외) 신규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진행을 하며 그 프로젝트가 2014년01월01일부터 하면 문서 78/2014/TT-BTC 호의 제VI장 18조,5항, a점에 세부로 규정된 경우들중에 하나로 해당되면 그 지점이 공단단지에 신규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.

각 회사들은 다음 주의도 한다. 본 문서 91/2014/NĐ-CP 호에 따르면 투자허가서를 받았던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에 허가발급공관에 보내준 첫번째 신고서류중에 총투자금 과 단계별 투자진행 및 일정을 반영했으면 다음 진행단계에 그 일정따라 (단. 객관적 애로사정 및 불가항경우 제외)실제적 진행되면 첫번 투자허가를 득한 프로젝트의 부분의성분적인 프로젝트로 감안되고 첫번째투자프로젝트에 수혜하고 있는 세금혜택을 같은 기준으로 받게된다. 그리고 2014년 01월 01일 전에 허가서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엔 세금혜택은 2014/01/01일 부터의 기준으로 계산된 남은 시간내에 세금혜택을 받게된다.

2. 신설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의 혜택에 대하여

2014년전 부터 법규에 따라 법인세의 혜택을 받지 못한 법인세혜택을 수혜되지않는 공단단지외에 자리잡은 회사들인경우엔 2014/ 01/01일부터 증설투자로인한 생산규모 확대,생산성 증가,생산공법 개선등을 해서 상기에 반영된 문서 218/2013/NĐ-CP 호의 제4장, 16조 5항의 규정중의 증설 투자의 3개 목표를 만족한다 면서 동시에 시행령 218/2013/ NĐ-CP 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게된 투자분야 및 지역에 해당 하면 (당사가 투자하는 공단단지엔 낙후경-제회 조건부 지역을 있는 조건 포함) 회사의 증설투자 프로젝트의 수입 (income) 은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남은 시간내에 (있으면) 법인세 혜택을 따라 수혜하거나 혹은 증설투자 항목에 따른 법인세 혜택을 받다.

활동중의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공법개선, 설비교체 및 개량투자를 하는 경우엔 시행령218/2013/NĐ-CP 호에 규정된 세금혜택을 수혜된 지역 및 분야에 해당 하지만 시행령 218/2013/NĐ-CP호 의 제16조5항에 규정된 3개목표중에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세금혜택의 수혜는 활동중의 프로젝트의 남은 기간내에 (있으면) 따라 집행한다.

* 우리 Grant Thornton (VN)의 유의로서 정부의 문서 91/2014/NĐ-CP호 에 따라 회사는 투자 프로젝트가 세금혜택을 수혜하고 있으며 2009- 2013 단계에 영업, 생산진행 과정중 계속 설비,기계들을 더 투자가 있어서도 그런 추가 투자로 인한 증가수입분에 대한 세금혜택을 진행제안의 남은 기간에 같은 기준으로 받을수가 있다.

보충적 참고로 하면 개념 “ 생산영업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기계, 설비의 추가 투자 ” 은 본 정부 문세에 반영되지 않았다.

Hai Duong성 (province) 세국의 문서 4360/CT-TTHT 호를 2014년 10월 03일에 발표해서 단독적 세금계산 (“APAs”)의 확정 방법에 대한 선택의(performs registration)에 대한 신고절차 안내를 해주었다.

그런 문서에 근거하면 당사는 연결 거래인 (related transaction) ” 수출의류 가공작업을 하고 모회사 (100%자본 소유)에 대한 국내에 구매된 원,부자재를 공급해줌에 대한 단독적 APA 진행을 위한 각 절차해결 및 등록을 하는 경우엔 납세자의 정식적 ATP서류 승인에 대한 국세청의 회답문서가 있을때 자문 과정 진행후에 당사는 양식 2/APA-CT의 서류를 국세청에 보내서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.

세무관리중 APA적용에 관련된 이해를 하려면 회사들이 우리 GT (VN)의2014년05월 07일자 의 소식통 내용을 참고 할수가 있다.

세국청의 문서 4278/TCT-CS 호를 2014년 10월 02일에 발표로서 수출용 서비스에 대한 VAT 에 관련하여

본 문서에 따라 회사는 외국 본사가 있는 고객들에게 IT 공학법규정에 근거된 Software development - 개발 서비스 및 IT기술 (Information Technology) 서비스를 제공해준 경우엔 그런 서비스를 베트남 외에 사용하게 되면 수출용 서비스 이라는 확인을 받고 VAT=0%로 적용되지만 재무부의 2013/12/31일에 문서219/2013/TT-BTC호의 제9조, 2항, b점의 조건들에 만족하면 된다. 조건 다음:

- 외국에 있거나 비세관 지역(non – tariffareas)내에 있는 개인, 조직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약서가 있다.
- 은행을 통해서 수출서비스대금의 증빙이 있고 법규의 기타 증빙들을 보유한 경우.

세국청의 문서4277/TCT-CS 호를 2014/ 10/02일에 발급으로 환차손(foreign exchange losses) 에 관련하여

그문서 내용에 근거하면 회사들이 Loans을 자본 투입 금으로 전환하는 근거로 장기와 단기간의 차입금을 외국 회사에 결재해준 경우엔 빚값은시점에 외화의 Loan 평가를 위한 환차율의 손해는 그 기간내에 발생한 환차손의 적자금으로 평가되고 법인세를 계산할때 비용공제를 할수있다.

세국청의 문서 3924/TCT-CS 호를 2014 /09/ 10일에 발급으로 농산물에 대한 조세 정책에 관련하여

본 문서에 따라 :

- 각 회사는 생산자가 직접 파는 농산을 구매하나 VAT 과세의 매출금액 이하 (1억 VND /년)의 한가족, 영업개인의 상품 구매 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엔 양식 01/TNDN (재무부의 시 행령 78/2014/TT-BTC회의 발급으로) 처럼 통계List를 작성 하면서 납품자에 대한 결재증빙들과 삽입한다.
- 회사는 영업집이나 개인의 농산물을 구매한경우엔 (상기의 경우 제외) 규정처럼 재무 영수증을 사용해야하고 상기의 시행령 78/2014/TT-BTC호의 제6조, 1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만족되면 법인세를 계산할때 공제된비용으로 감안한다.

기타 소식

세관국의 2014년 10월 01일에 문서11910/TCHQ-TXNK호 발급으로 수출 절차를 할때의 세관 서류중 재무 영수증 사용에 관련 하여

본 문서는 재무부의 문서 11352/BTC-TCHQ 호 2014/08/14일에 발급을 안내 참조로 하면서 외국에 수출할때 와 외국 상인의 제 자리(on spot) 수출 규정의 절차를 진행한 경우엔 수출 영수증을 대신한 무역영수증을 사용한다.

국내회사들이 비세관 지역에 상품수출을 하거나 수출가공 (export processing)회사에 상품을 판매해준 경우엔 VAT (invoice)용 영수증을 아니면 재무부의 문서 39/2014/TT-BTC호 2014/-3/31일 발급의 규정 내역 처럼 상품판매하는 영수증을 사용한다.

재무부의 시행령 146/2014/TT-BTC 호 (발표일 2014/ 10 /06) 발급으로 증권회사 와 기금 (fund)관리 회사에 관련하여.

본 시행령은 증권회사, 기금관리회사, 허가되고 베트남에 설립 및 활동을 하는 외국 기금관리 회사의 지점에 대한 재정 의무를 안내해준다.

본 문서엔 다음의 구체적 문제들을 안내한다.

- 자본금 및 자산의 관리 및 사용;
- 재정 안전성;
- 매출금 및 비용의 관리;
- 회계 및 감사 제도 와 재정현황 과 증권투자에 대한 보고.

본 시행령은 2014 년 11월 21일 부터 발효되고 2014년 재정 년도에 적용하며 재무부의 증권 주식회사와 유한 책임회사(Limited liability securities Company)에 대한 재정관리제도를 안내하는 시행령 의11/2000/TT-BTC호 (발표일 200/2/1) 를 대체한다.



연락처

정보를 더 알고 싶으시면

귀사들은 본소식통에 반영

된 문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

하고자 하신 때에 저희 자문
전문가하고 서심없이 연락
해주시면 됩니다.

상기의 소식통내용등 down

load 를 하시려면 당사의

다음 Web에 검색하시면

됩니다:

www.gt.com.vn

Hanoi Office

18th Floor,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

106 Hoang Quoc Viet

Cau Giay District, Hanoi

Vietnam

T + 84 4 3850 1686

F + 84 4 3850 1688

Hoang Khoi

Tax Partner

D +84 4 3850 1618

E Khoi.Hoang@vn.gt.com

Nguyen Dinh Du

Tax Partner

D +84 4 3850 1620

E Du.Nguyen@vn.gt.com

Pham Vinh

Consultant– Korean Desk

D +84 4 3850 1686

E Vinh.Pham@vn.gt.com

Pham Ngoc Long

Tax Director

D +84 4 3850 1684

E Long.Pham@vn.gt.com

Kieu Hoai Nam

Tax Senior Manager

D +84 4 3850 1681

E Nam.Kieu@vn.gt.com

Ho Chi Minh Office

28th Floor, Saigon Trade Center

37 Ton Duc Thang Street

District 1, Ho Chi Minh City

Vietnam

T + 84 8 3910 9100

F + 84 8 3914 3748

Nguyen Hung Du

Tax Partner

D +84 8 3910 9231

E HungDu.Nguyen@vn.gt.com

Valerie – Teo Liang Tuan

Tax Director

D +84 8 3910 9235

E Valerie.Teo@vn.gt.com

Tran Nguyen Mong Van

Tax Senior Manager

M +84 8 3910 9233

E MongVan.Tran@vn.gt.com

Nguyen Bao Thai

Tax Senior Manager

M +84 8 3910 9236

E Thai.Nguyen@vn.gt.com

우리 Grant Thornton (Vietnam)의 소식통들은 참고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우리는 소식통의 잘못들과 관련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더이상 소식통을 사용하지하려면 저희 자문전문가들과 연락하시면됩니다.

